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4,742,949	8,242,288
일반회계	227,269,185	6,818,076
특별회계	47,473,764	1,424,213
공기업특별회계	33,465,863	1,003,9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52,073	574,5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313,790	429,414
기타특별회계	14,007,901	420,237
주택사업특별회계	202,500	6,0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1,778	30,653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244,973	7,3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7,920	15,538
공업단지특별회계	549,486	16,48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11,367	129,3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92,471	14,77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6,507,794	195,234
기반시설특별회계	159,612	4,78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5,01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